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대학원학사위원회 규정

제정 1997. 10. 22.

개정 2002. 2. 15.

2003. 12. 16.

2005. 3. 4.

2012. 5. 10.

개정 2020. 9. 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0조에 규정된 사항을 예비로 심의하기 위한 농업생명과학대학 대학원학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은 학장, 부학장, 농림생물자원학부장, 농생명공학부장, 바이오시스템공학과장, 농산업교육과장, 협동과정 전공주임, 대학원 교과과정 전공주임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장이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대학원장의 위임을 받은 소관 대학원 학부(과) 및 교과과정전공의 학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농업생명과학대학내의 소관 대학원 학부(과) 및 전공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과과정의 운영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학과 및 전공의 신설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5.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분과)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임무, 운영 등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부칙(제6호, 1997.10.22)

이 규정은 1997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0호, 2002.2.15.)

이 규정은 200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2호, 2003.12.16.)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6호, 2005.3.4.)

이 규정은 200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5호, 2012.5.10.)

이 규정은 201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2호, 2020.9.4.)

이 규정은 2020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